



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기준

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생물자원 연구성과 및 관련정보를 생명자원 연구성과 전담기관 또는 각 부처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의무적으로 기탁하여야 하며, 기탁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자원명	기준내용
미생물자원	-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(미세조류는 사면배지를 이용한 활성배양체 2개 또는 액체배지를 이용한 활성배양체 1개)
동물자원	- 세포주 :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- 동물자원 : 수정란, 정자 또는 성체 (협의) 예시) 설치류의 경우 수정란 300개 이상
식물자원	- 세포주 : 활성배양체 2개 - 종자 : 건조종자 300개 (협의) - 추출물 : 최초 추출물 1g 이상
유전체자원	- 유전체 또는 유전자가 도입된 미생물자원 : 동결보존 vial 2개 또는 활성배양체 1개 - 플라스미드, 벡터 : 50 μ g 이상